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의 재무제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1(당)기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	-------	---

재 무 제 표

재무상태표	-----	4
-------	-------	---

운영성과표	-----	5
-------	-------	---

순자산변동표	-----	6
--------	-------	---

현금흐름표	-----	7
-------	-------	---

주석	-----	8
----	-------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재단 경영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첨부된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8-2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8-2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의 출연주식 13,770백만원이 있으며, 이사 현원 5명중 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1명(이사장)이 존재합니다.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임 덕 택

임 덕 택



2017년 03월 23일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7년 3월 23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재무제표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제 1(당) 기

2016年 04月 12日 부터

2016年 12月 31日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권혁운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재무상태표

제 1(당)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문암장학문화재단

(단위:원)

과 목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 계
	제 1(당) 기	제 1(당) 기	제 1(당) 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76,017,840	300,067,168	376,085,008
(1) 당 좌 자 산	76,017,840	300,067,168	376,085,008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6,017,840	56,848	76,074,688
2. 단기 금융 상품	-	300,000,000	300,000,000
3. 당 기 법 인 세 자 산	-	10,320	10,320
II. 비 유 동 자 산	14,070,000,000	13,365,000,000	13,365,000,000
(1) 투 자 자 산	14,070,000,000	13,365,000,000	13,365,000,000
1. 매 도 가 능 증 권	-	13,365,000,000	13,365,000,000
2. 수 익 사 업 출 자 금	14,070,000,000	-	-
총 자 산	14,146,017,840	13,665,067,168	13,741,085,008
부 채			
I. 유 동 부 채	-	-	-
II. 비 유 동 부 채	-	-	-
총 부 채	-	-	-
순 자 산			
I.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14,070,000,000	14,070,000,000	14,070,000,000
(1) 자 본 금	14,070,000,000	14,070,000,000	14,070,000,000
1. 기 본 재 산	14,070,000,000	-	14,070,000,000
2. 자 본 금	-	14,070,000,000	-
(2) 자 본 잉 여 금	-	-	-
II.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	(405,000,000)	(405,000,000)
(1) 자 본 조 정	-	-	-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5,000,000)	(405,000,000)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405,000,000)	(405,000,000)
III. 제약이 없는 순자산	76,017,840	67,168	76,085,008
(1) 이 익 잉 여 금	76,017,840	67,168	76,085,008
1. 이 월 이 익 잉 여 금	-	-	-
2.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76,017,840	67,168	76,085,008
자 본 총 계	14,146,017,840	13,665,067,168	13,741,085,008
부채 와 자 본 총 계	14,146,017,840	13,665,067,168	13,741,085,00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운영성과표

제 1(당)기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문암장학문화재단

(단위:원)

과 목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 계
	제 1(당)기	제 1(당)기	제 1(당)기
I.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변동			
1. 사업 수익	-	67,168	67,168
(1). 고유목적사업수익	-	67,168	67,168
1. 이자수익	-	67,168	67,168
(2). 고유목적사업부문전입금	-	-	-
1. 수익사업전입금	-	-	-
2. 사업 비용	291,982,460	-	291,982,460
(1). 고유목적사업비용	291,982,460	-	291,982,460
1. 사업수행비용	249,000,000	-	249,000,000
장학금	210,000,000	-	210,000,000
공익사업비	39,000,000	-	39,000,000
2. 일반관리비용	42,982,460	-	42,982,460
지급수수료	41,891,900	-	41,891,900
지급임차료	994,000	-	994,000
세금과공과	96,560	-	96,560
3. 사업 이익	(291,982,460)	67,168	(291,915,292)
4. 사업 외 수익	368,000,300	-	368,000,300
(1). 기부금	368,000,000	-	368,000,000
(2). 잡이익	300	-	300
5. 사업 외 비용	-	-	-
(1). 목적사업전출금	-	-	-
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76,017,840	67,168	76,085,008
7. 법인세비용	-	-	-
8. 당기 순이익	76,017,840	67,168	76,085,008
II.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	-	-
III.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변동	-	-	-
1. 순자산의 증가(감소)	14,146,017,840	13,665,067,168	13,665,067,168
IV. 순자산의 증가	-	13,665,067,168	13,665,067,168
1. 기초순자산	-	-	-
2. 기말순자산	14,146,017,840	13,665,067,168	13,665,067,16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순자산변동표

제 1(당) 기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문암장학문화재단

(단위: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I. 수익사업						
2016.4.12.	-	-	-	-	-	-
출연금(수익사업운동)	14,070,000,000	-	-	-	-	14,070,000,000
당 기 순 이 익	-	-	-	-	67,168	67,168
매 도 가 능 증 권 평 가 손 실	-	-	-	(405,000,000)	-	(405,000,000)
2016.12.31.	14,070,000,000	-	-	(405,000,000)	67,168	13,665,067,168

구 분	기본재산	보통재산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II. 목적사업						
2016.4.12.	-	-	-	-	-	-
출연금	14,070,000,000	-	-	-	-	14,070,000,000
당 기 순 이 익	-	-	-	-	76,017,840	76,017,840
2016.12.31.	14,070,000,000	-	-	-	76,017,840	14,146,017,840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1(당)기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문암장학문화재단

과 목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 계
	제 1(당) 기	제 1(당) 기	제 1(당) 기
I. 사업활동 현금흐름 (주 14)	76,017,840	56,848	76,074,688
1. 사업활동현금유입	368,000,300	67,168	368,067,468
(1). 제약이없는 기부금의유입	368,000,000	-	368,000,000
(2). 이자수익의유입	-	67,168	67,168
(3). 잡이익	300	-	300
2. 사업활동현금유출	(291,982,460)	(10,320)	(291,992,780)
(1). 장학금	(210,000,000)	-	(210,000,000)
(2). 공익사업비	(39,000,000)	-	(39,000,000)
(3). 일반관리비용의 지급	(42,982,460)	-	(42,982,460)
(4). 기타사업활동 현금유출	-	(10,320)	(10,320)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	-	-
1 투자활동현금유입	-	-	-
2 투자활동현금유출	-	-	-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	-	-
1 재무활동현금유입	-	-	-
2 재무활동현금유출	-	-	-
IV. 현금의 증가(감소) (I + II - III)	76,017,840	56,848	76,074,688
V. 기초의 현금	-	-	-
VI. 기말의 현금	76,017,840	56,848	76,074,68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당) 기 2016년 12월 31일현재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1. 일반사항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이하 “당 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4월 12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재를 육성하고, 학술과 문화진흥을 위해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재단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가. 장학금의 지급
- 나. 장학 및 연구활동비 지원사업
- 다.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지원
- 라. 자선사업 및 자산사업 지원

1-1. 재단의 출연금

당 재단은 최초 설립시 아이에스동서(주)로부터 기본재산으로 현금 300백만원을 출연받았으나, 이후 아이에스지주(주)로부터 추가 출연에 의한 당기말 현재 기본재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재산명	종별	수량	출연금액
현금	정기예금		300,000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0,000	13,770,000
	합계		14,070,0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당 재단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당 재단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수익인식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통화, 통화대용증권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채무증권과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합니다.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에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을 말합니다. 단기금융상품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인 금융상품을 말하고 장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2-3. 유가증권

유가증권(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은 취득목적과 보유의도에 따라 취득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의 적정성은 재무제표일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있는 지분증권의 시장가액은 재무제표일 현재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으며,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증권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금액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재무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증권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하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통합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순자산

순자산은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의 종류에 따라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및 제약이 없는 순자산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중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처분하지 못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순자산 및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투자하여 영구적인 수익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순자산은 영구적인 제약이 있는 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중 특정 활동에 사용될 순자산,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되어야 할 순자산, 특정 기간에 사용될 순자산 및 유·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될 순자산은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또는 일정 기간의 경과 후에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시간상의 제약, 특정 용도에 자산을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상의 제약 또는 이들 두 가지 제약이 동시에 부과된 순자산을 말합니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익, 제약이 없는 기부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및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결과의 금액입니다.

제약이 없는 순자산이라 하더라도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은 없지만 조직의 성격, 조직의 환경 또는 조직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통상적인 약정에 의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제시한 제약 이외의 제약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일 현재 당 재단에 일시적제약이 있는 순자산 또는 제약이 없는 순자산은 없습니다.

2-5. 법인세비용

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법 제 29조에 의한 손금산입으로 사업외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6. 추정의 사용

당 재단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산 및 부채의 금액, 총당부채 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7. 상증법상의 보고의무

1). 출연재산명세의 보고의무

당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운영성과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나.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마.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2).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보고의무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5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법인이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이행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그에 따른 세무확인서를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 나.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 여부
- 다.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라.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준수 여부
- 마.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3.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사용이 제한된 예금

3-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종류	전기	사용제한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업자유예금	76,075	해당없음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등	300,000	해당없음
합계		376,075	

3-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 중 담보제공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없습니다.

4. 매도가능증권

4-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분류	종목	발행총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시가및순 자산가액	장부가액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718,467	300,000	0.98%	13,770,000	13,365,000	13,365,000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식 - 계속

4-2. 보고기간 중 미실현보유손익 및 취득·처분에 따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	실현손익
		(평가이익)	(취득 등)	(평가손실)	(매각 등)		
아이에스동서주	-	-	13,770,000	(405,000)	-	13,365,000	-

5. 순자산

5-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제약이 없는 순자산과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없으며, 영구적제약이 있는 순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 계
자본금	14,070,000	14,070,000	14,070,000
기본재산	14,070,000		14,070,000
수익사업자본금		14,070,000	
자본잉여금	-	-	-
자본조정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05,000)	(405,000)
이익잉여금	76,018	67	76,085
고유목적사업적립금	-	-	-
미처분이익잉여금	76,018	67	76,085
합 계	14,146,018	13,665,067	13,741,085

5-2. 출연받은 재산명세

보고기간 중 당 재단이 출연받은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출연자	출연재산 종류	당 기	
		출연일자	출연받은 재산가액
아이에스동서주	현금	2016-05-03	300,000,000
아이에스지주주	주식	2016-11-21	13,770,000,000
합 계			14,070,000,000

상기 출연받은 주식은 2017년 1월 10일자로 관할 등기소에서 자산의 총액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5-3. 기본재산 목록

기본재산은 출연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재산은 당 재단 정관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출연재산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일 현재 당 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재산 총괄표

재산명	당 기	
	수량(주)	평가액(천원)
현금		300,000
주식	300,000	13,770,000
합 계	300,000	14,070,000

(주) 주식 평가액은 출연 당시 또는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취득허가에 의한 취득 당시의 평가금액입니다.

2). 기본재산 세부목록

재산명	종별	당 기	
		수량(주)	평가액(천원)
현금	정기예금		300,000
주식	아이에스동서(주)	300,000	13,770,000
합 계		300,000	14,070,000

5-4. 보통재산

목적사업부문의 보통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을 의미하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5-5. 영구적 제약의 내용

당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및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고유목적사업적립금

6-1.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의 성격

당 재단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익목적사업비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가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지원의 수단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동 금액의 설정을 수익사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당 재단은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서이46012-10761)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의거 동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사회 의 이익처분 과정을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며, 매 회계년도중의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공익목적사업비는 이익처분 결의시 동 적립금액의 사용금액으로 이입됩니다.

6-2. 보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동내역은 이익잉여금 처분후의 변동내역으로,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의 적립(설정)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의 지출(사용)은 임의적립금 이입으로 당해 회계년도 정기 이사회 의 결의로 이익잉여금이 처분됩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초잔액	증가(재분류및설정)		감소 (사용)	기말잔액
			(재분류)	(설정)		
당기재무상태표	처분전(재무제표일)	-	-	-	-	-
	처분후(정기이사회)	-	-	67	-	67

- 1). 당 재단이 보고기간 중 창출한 고유목적사업수익(이자수익)으로 당 회계년도 이익처분을 위한 정기이사회에서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이익처분을 하였습니다.

당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수익 이외의 사업외수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주석 - 계속

2). 당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장학사업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비(장학금 등)와 고유목적사업관련 운영경비(일반사업 비용)의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당 기		비고
직접공익목적사업비	249,000		
장학금	210,000		
공익사업비	39,000		
고유목적사업관련운영경비	42,982		
지급수수료	41,892		
지급임차료	994		
세금과공과	97		
합 계	291,982		

7. 이익잉여금처분

당 재단의 보고기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1(당)기 2016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 2017년 3월 31일

재단법인 문암장학문화재단

(단위 : 천원)

과 목	고유목적사업부문	수익사업부문	합 계
	제1(당)기	제1(당)기	제1(당)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76,018	67	76,08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
(2). 당기순이익	76,018	67	76,085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III. 합 계	76,018	67	76,085
IV. 이익잉여금처분액	-	67	67
(1). 고유목적사업적립금	-	67	67
V.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6,018	-	76,018

8. 특수관계자

8-1. 출연자의 이사선임 현황

당 재단의 등기이사는 총 5명이며, 이 중 1인은 출연자이며, 그 이외의 등기이사는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8-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1).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은 출연 주식은 아이에스동서(주) 13,770백만원입니다.
- 2). 당 재단은 보고기간 중 상기 1)의 사항을 제외하고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내용은 없으며, 또 이들에게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재산을 임대차,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보고기간 중 당 재단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고, 홍보한 경우(정당한 대가의 수수를 불문함)가 없습니다.

9. 법인세비용

당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수익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2호(이자 및 배당 소득)의 수익으로 동 수익은 법인세비용 산출시 손금산입함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으나, 보고기간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익에서 관련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80%를 초과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한 납부할 세액을 법인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당 재단은 해당 소득이 없습니다. 당 재단의 당기 법인세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운영성과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67
법인세법상 익금가산액	-
법인세법상 손금가산액	(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액	67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
산출세액 (법인세 및 주민세)	-
기납부세액	10
납부(환급)할 세액	(10)

10. 현금흐름표

10-1. 보고기간 중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10-2. 당 재단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에 의해 직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간접법에 의한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역	당기
I.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6,075
(1) 당기순이익	76,085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0)
1.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10)

11. 성격별 비용계산서

당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용을 성격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비 목	당기	
직접공익목적사업비	249,000	
(1). 장학금	210,000	
(2). 공익사업비	39,000	
고유목적사업관련운영경비	42,982	
(1). 지급수수료	41,892	
(2). 지급임차료	994	
(3). 세금과공과	97	
계	291,982	

12. 포괄손익

1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초잔액	증가	감소	기말잔액	비고
매도가능권평가손실	-	(405,000)	-	(405,000)	거래소시가 평가

12-2.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비고
당기순이익	76,085		
기타포괄손익	(405,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405,000)		
포괄손익	(328,915)		

13. 재무제표의 승인기관

당 재단의 당기 재무제표는 2017년 3월 29일 당 재단의 정기이사회에서 승인 될 예정 입니다.